

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제정사실 게시

2021. 11. 10

셀레니언자산운용은 「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16조,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0조,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」 제9조 및 관련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, 회사의 임직원 및 금융상품판매대리·중개업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하기 위하여 2021년 11월 10일 이사회회의 승인을 거쳐 『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』을 제정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.

이 기준은 회사 임직원 등의 직무수행 시 준수하여야 할 기준으로써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.

이 기준은 「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 시행일인 2021년 9월 25일부터 적용합니다. 다만 당사는 현재 판매업무를 시행하고 있지 않음으로 인해 이 규정에서 판매업무와 관련된 몇몇 조항들은 당사가 판매업무를 개시하는 날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.

이 기준은 당사의 모든 임직원과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한 모든 업무에 적용됩니다. 또한 당사의 업무 일부를 위탁받은 자 및 위탁업무에 대해서는 그 위탁범위 내에 한하여 적용합니다.

이 기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.

가. 금융소비자보호 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

나. 임직원의 업무 수행 시 준수해야할 기준 및 절차

다.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의 운영을 위한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

라.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, 조치 및 평가에 관한 사항

마. 업무수행 직원의 자격, 교육수준, 보상체계 및 책임확보 방안 등에 관한 사항

바.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변경 절차

사. 고령자 및 장애인의 금융거래 편의성 제고 방안 등에 관한 사항